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63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 의 자 : 이소영 · 김원이 · 김태년
김한규 · 조계원 · 임호선
전용기 · 김용만 · 임오경
장철민 · 김 윤 · 정준호
박지원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6주”를 각각 “3주”로 한다.

제3편 제4장 제13절에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주주제안권에 관한 특례) ①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제1항의 방법으로 주

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63條의2(株主提案權) ①議決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の 3 이상에 해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 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6주</u>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株主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u>6주</u>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會議의 目的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株主가 제출하는 議案의 要領을 第363條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第363條의2(株主提案權) ①----- ----- ----- ----- ----- ----- ----- ---3주----- ----- ----- ----- ----- -----. ②----- -----3주-----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4(주주제안권에 관한 특례) ①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1항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 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
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
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
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
다.